

-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[별표 5의2] <신설 2019. 2. 13.>
배출물 승인 표시(제13조의2제4항 관련)



- ※ 비고: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물의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 "KG" 표시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의 인장 또는 영문약어로 대체한다.